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1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년 12월 14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교통시설과장 윤 범 수)

□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의 미망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포함하고, 저공해자동차와 시장이 발행하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의운전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의 미망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저공해 자동차 이용자를 포함하고, 시가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에게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자원봉사 나눔티켓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공공기관등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범위를 시민회관·복사골문화센터·영상문화단지·만화정보센터 및 체육관시설 등을 추가함.(안 제19조)
- 노외주차장 설치시 지원하는 보조금 교부범위를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25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의 자원봉사자 수 및 카드발급자는 ? ○ 나눔봉사 카드제도의 설명은 ? ○ 관련부서와의 협조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 앞으로 본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5,177명이며 자원봉사카드 발급자는 약 2,000명으로 되어 있음. ○ 자원봉사자중 카드 발급자에 대하여 시간당 300마일리지(원)를 적립시켜 주고 티켓을 발급받아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나눔 티켓으로 활용할수 있음. ○ 자원봉사자 인원수에는 항상 변동이 있으므로 업무의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본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음. ○ 우리시 문화시설은 물론 부천시와 협약(계약)을 체결하거나 기 체결된 백화점, 대형할인 매장 등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62호
의결 년월일	2005. 12. 23 (제123회)

제출년월일 : 2005. 11. 18.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의 미망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포함하고, 저공해자동차와 시장이 발행하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의 미망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저공해자동차 이용자를 포함하고, 시가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에게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자원봉사 나눔티켓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나. 공공기관등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범위를 시민회관·복사골문화센터·영상문화단지·만화정보센터 및 체육관시설 등을 추가함.(안 제19조)
- 다. 노외주차장 설치시 지원하는 보조금 교부범위를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25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청사와 시민회관·복사골문화센터·영상문화단지·만화정보센터 및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중 “1,000제곱미터이상”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주차장법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중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단서중 “도로교통법”을 각각 “「도로교통법」”으로 하며, 제16조중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25조제1항중 “부천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제3호나목중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상이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을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또는 그 미망인의 자가운전차량(상이자 또는 그 미망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자가운전차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아. 부천시가 발행하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자원봉사 나눔티켓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제3호가목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사목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u>공공기관</u>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시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9조(<u>공공기관등</u>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청사와 시민회관·복사골문화센터·영상문화단지·만화정보센터 및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5조(보조금 교부 방법 등) ①·② (생략)</p> <p>③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u>1,000제곱미터</u>이상 <u>2,000제곱미터</u>미만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3분의 1을 보조하여 국·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5분의 1</p>	<p>제25조(보조금 교부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500제곱미터 이상</u>----- ----- ----- ----- -----</p>			

현행	개정안
<p>마.~사. (생략)</p> <p><신설></p>	<p>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p> <p>마.~사. (현행과 같음)</p> <p>아. 부천시가 발행하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자원봉사 나눔티켓으로 징수할 수 있다.</p>